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1

발의연월일: 2024. 9. 10.

발 의 자:서천호·이만희·엄태영

김태호 • 조인철 • 박덕흠

백종헌 • 이종배 • 정성국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하고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FTA 관세철폐가 시행되기도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누적 피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

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 시행한다"를 "20년간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
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	른 피해보전) ①
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	
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	
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	
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	
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	
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	
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u>10년</u>	<u>20년</u>
간 시행한다.	<u>간 시행한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